

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(조상호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32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4월 02일
발 의 자 : 조상호, 권수정, 김경영,
김경우, 김제리, 김화숙,
박기재, 이광호, 이영실,
이정인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결산 기한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하고자 함.
-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재단의 결산서류 제출기한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로 규정함 (안 제15조제2항)
- 나.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(안 제15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”을 “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”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재단은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 22조의2에 따라 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5조(사업계획서, 결산서 등의 제출) ① (생략)</p> <p>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<u>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</u>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15조(사업계획서, 결산서 등의 제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</u>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재단은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2조의2에 따라 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<u>예산결산특별위원회</u>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